



농림축산식품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가금 입식 전 신고 및 일제 입식·출하 준수 철저 재강조

1. 관련: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5729('20.11.17.)호, -5248('20.10.29.)호, -4946('20.10.15.)호, -4869('20.10.12.)호, -4646('20.9.28.)호 및 방역정책과-5236('20.9.15.)호

2. 우리 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른 가금의 입식 전 신고와 일제 입식·출하(all-in all-out) 준수에 대한 사항을 위 호를 통해 기 알려 드린 바 있으나, 우리 부 점검 결과, 이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금번 발생지역 육용오리농가 조사결과 30일 사이 12번의 입식사례 적발

3. 이에 고병원성 AI의 확산 및 전파 방지를 위해 가금 사육농가 및 계열화사업자 등의 방역준수사항을 아래와 같이 재차 강조하오니, 지자체는 담당 공무원 관련규정 숙지와 관련 협회에서는 관내(소속) 농가에 대해 지도·홍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20.12.4.(금) 관내(소속) 농가에 문자메시지 일괄 발송

- 아 래 -

가. 일제 입식·출하 및 가금사육 휴지기 준수(가전법 제17조의6 관련)

○ 육계, 육용오리 사육 농가는 일제 입식·출하

- 농가별 입식과 출하 각 7일 이내(축사 단위가 아닌 농가 단위 적용)

* '20.11월부터 '21.2월까지의 출하 후 14일 이상 입식제한 기간 준수

○ 계열화사업자는 사육가금의 도축·출하 시 중량이 미달되는 가금 등이 농장에 남아있지 않도록 전량 수거 조치

○ 지자체는 관내 농가에서 가금 일제 입식·출하를 어긴 것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 처분(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조치 철저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농가 점검·예찰 시 가금이 모두 출하되지 않은 농가에서 가금을 추가로 입식한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 이첩

- 해당 지자체는 현장 점검하여 그간 해당 농가에서 제출한 입식 신고서 상 사육수 등 대조하여 일제 입식·출하 준수 여부 단속

나. 입식 전 자체 방역점검 및 신고 이행 철저(가전법 제15조의2 관련)

- 가금 입식 전 1주일 전까지 자체 방역실태 점검 후 시·군·구에 신고서 제출
 - 오리농가는 자체 방역실태 점검(1차 점검), 지자체에서 현장 확인(2차 점검) 후 방역시설 등 문제가 없을 경우 입식 허용
 - 농가 점검 결과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가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는 입식 사전 신고 시 불임서류인 신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검토 철저
 - * 신고서에 기재된 사항에 흠 또는 거짓이 있거나, 필요 구비서류가 첨부되지 않아 입식과 관련된 중요 정보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고인에게 증명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고 보완된 이후 신고 접수
- ※ 농식품부 방역정책과-5236('20.9.15.)호 참조
- 육계 및 육용오리 농가의 경우 일제 입식 출하 규정 준수 여부 확인후 이상이 없는 경우 입식 허용
- "AI 특별관리지역" 내 농가는 입식 전 신고 대상 모든 가금 사육 농가의 방역 실태를 점검 후 입식 허용
- 계열화사업자는 위탁농가 신규 계약 추진 시 농가의 방역시설을 점검하고 미흡한 경우 자체 개선 후 위탁 계약 체결
- 지자체는 관내 농가에서 입식 전 신고 의무를 어긴 것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 처분 조치 철저(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입식 전 신고된 농가 목록을 지속적으로 현행화하고, 휴업 및 미사육 중인 농가도 지속 점검·예찰하여 입식 전 신고가 되지 않은 농가에서 가금을 입식한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 이첩
 - 해당 지자체는 현장 점검하여 해당 농가에서 사육 중인 가금이 확인되는 경우 원칙적 과태료 부과. 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신자 축산정책과장, 방역정책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방역감시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역학조사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조류인플루엔자연구진단과장), 서울특별시(동물보호과장), 부산광역시(농축산유통과장), 대구광역시(농산유통과장), 인천광역시(농축산유통과장), 광주광역시(생명농업과장), 대전광역시(농생명정책과장), 울산광역시(농축산과장), 세종특별자치시(농업축산과장), 경기도지사(동물방역위생과장), 강원도지사(동물방역과장), 충청북도지사(동물방역과장), 충청남도지사(동물방역위생과장), 전라남도지사(동물방역과장), 전라북도지사(동물방역과장), 경상북도지사(동물방역과장), 경상남도지사(동물방역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동물방역과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대한양계협회장, (사)한국육계협회, (사)한국오리협회, 사단법인 한국토종닭협회, (사)한국육용종계부화협회

주무관

강호성

서기관

황성철

조류인플루엔자 전결 2020. 12. 4.

자방역과장 이기중

협조자

시행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6387

(2020. 12. 4.)

접수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어진동)

/ <http://www.mafra.go.kr>

전화번호 044-201-2557

팩스번호 044-863-9210

/ 1zzibang@korea.kr

/ 대국민 공개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